

# 「예비군법」 개정안(개정 '25. 3. 18. / 시행 '25. 9. 19.) 안내

예비군법 [법률 제19082호, 2022. 12. 13., 일부개정]	예비군법 [법률 제20809호, 2025. 3. 18., 일부개정]
<p>제10조의2(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)</p> <p>고등학교 이상의 <b>학교의 장</b>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.</p>	<p>제10조의2(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)</p> <p>고등학교 이상의 <b>학교의 장 및 교직원</b>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.</p>
<p>제15조(벌칙) ① ~ ⑦ (생략)</p> <p>⑧ 제10조 및 제10조의 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<b>사람</b>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⑨ ~ ⑫ (생략)</p>	<p>제15조(벌칙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제10조 및 제10조의 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<b>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</b>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⑨ ~ ⑫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5조의 2(과태료)</p> <p>①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② <b>제1항에</b>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 &lt;신 설&gt;</p>	<p>제15조의 2(과태료)</p> <p>① <b>제10조의2를</b>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<b>교직원</b>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② (기존 제①항과 동일)</p> <p>③ <b>제1항 및 제2항에</b>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</p>

 **예비군법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인터넷)에서 확인 가능**